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21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7.

## 2. 제안이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각종 재난대비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하였던 사항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5장 4절 49조” 에서 “5장 4절 46조” 의 형식으로 기존 조례안 대비 3개 조가 줄어들었음.

나. 제1장 총칙 : 제1조 ~ 제5조로 구성, 기존의 조 명칭 변동 없음

- 제2조(정의) : “용어” 나열 ⇒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 로 간결화

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 제1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위원회(안 제6조~제14조)
  - 기존 12개 조항에서 개정 9개 조항으로 간결화
- 제2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관리본부(안 제15조~제24조)

- 기존 12개 조항에서 10개 조항으로 간결화
- 제20조(직무대행) 관련법령 인용 조항
-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2항<sup>1)</sup>”으로 변경
- 신설 조항 제18조~20조, 제23조

- 제3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상황실(안 제25조~제26조)
  - 기존과 동일한 제명의 개정(안) 2개 조항
- 제4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안 제27조~제29조)
  - 기존과 동일한 제명의 개정(안) 3개 조항

#### 라.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안 제30조 ~ 제36조)

- 7개 조항으로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신설

#### 마.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안 제37조 ~ 제39조)

- 기존의 “피해상황의 신고” 조항 삭제

#### 바.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등(안 제40조 ~ 제46조)

- 제44조(안전취약계층<sup>2)</sup>에 대한 지원) 구체화

## 4. 참고사항

- 1)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취약계층 확대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라.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마. 각종 영향평가 결과

| 구분             | 검토의견                                                                                                                 | 반영 내용                                         |
|----------------|----------------------------------------------------------------------------------------------------------------------|-----------------------------------------------|
| 성별<br>영향<br>평가 |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는 성<br>별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br>이나,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br>관리자문단 구성 <sup>3)</sup> 할 시 위촉<br>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br>을 제안. |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br>② ---- 성별을 고려하여 -----     |
|                |                                                                                                                      |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br>② ---- 성별을 고려하여 ----- |

## 5.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 동안의 재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재난 취약계층의 지원과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